(시 자체사업) 중증장애인 부기급여 변경 추진 계획

장애등급제가 2019. 7.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사업인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대상자를 변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변경 근거 등

- 장애인복지법 개정(장애등급 폐지 등) 시행(2019. 7. 1 ~)
- 시민복지과-36117(2015. 9. 15)호(유사·중복 장애인복지사업 정비 계획)

Ⅱ 2018년 지원 실적

대 상(2015. 9. 15 ~)	'18.12월 대상인원	내용	지원액
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2급 및 중복 3급 중증 장애인	655명	1인/월 20 천원	13,100천원

Ⅲ 변경 추진 계획

- O 시 기: 2019. 7.1 ~
- 대 상: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단, 도비장애수당 대상자 제외)으로서 '19. 6월 지급 대상자에 한함.
 - '19. 7. 1.부터 기존 '장애등급' 폐지 및 '장애정도' 기준 도입 * 6등급 ⇒ '심한 장애(1~3급)'와 '심하지 않은 장애(4~6급)'
- O 인 원: 750명
- O 내 용: 1인/월 20천원
- '19. 예산 확보액: 180,000천원(시비 100%)
 - 2019. 1 ~ 5월 지급 실적 : 월 평균 648명, 77,560천원